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21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4. 21

다. 상 정 일 자 : 2006. 5. 1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과장 박노선)

가. 제안사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4조)
-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함(안 제12조)
-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과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제109조
- 예산조치 : 1,700천원
 - 위원회 수당 :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 20,000원 × 50건 = 1,000,000원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6. 1. 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 위원과 감독자 등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고,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사하구 경리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하며
-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개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로 인한 문제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